

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'만 나이'로 통일된다.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. 최대 2살이 어려워지는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.

출처 - 법제처

Q&A로 알아보는 '만 나이'

# 6월부터 한 살씩 어려워져요



+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세요!



+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

### 행정기본법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

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### 민법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

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※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.



### Q '만 나이'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
A 만 나이를 계산하는 법은 간단하다.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,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그 수에서 추가로 1을 더 빼주면 됩니다. 만 19세가 되는 해에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성년이 아니며, 만 18세가 되는 해에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입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

$$\text{이번 연도} - \text{태어난 연도} - 1 = \text{현재 나이}$$

ex) 2023 - 1992 - 1 = 30세

올해 생일부터

$$\text{이번 연도} - \text{태어난 연도} = \text{현재 나이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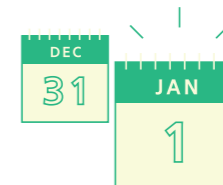
ex) 2023 - 1992 = 31세

### Q '만 나이'로 인해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?

A 취학 의무 연령, 각종 증명서, 국민연금 수령기간, 기초연금 수급 시기, 공무원 정년 등은 변화가 없습니다. 먼저 취학 의무 연령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. 또한 이미 현행 법령에서 '만 나이'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인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, 국민연금 수령기간, 기초연금 수급 시기, 공무원 정년 등은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.

### Q '만 나이'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?

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,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.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,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

### Q '만 나이 통일법'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?

A 「민법」, 「행정기본법」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, 법령,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'만'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,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

### Q '연 나이'는 무엇인가요?

A '연 나이'는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,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'현재 연도-출생연도'로 나이를 계산합니다. 「청소년 보호법」, 「병역법」 등 일부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사용 중인 방식으로,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.

※ 법령 및 자치법규에는 '만'을 표시하지 않습니다.

